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16호**

개선권고 재결

2026년 1월 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16호(개선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6-001호(예인선 태양25호 선원부상사건)])**

사 건 명 : 예인선 태양25호 선원부상사건

피요청자 : 제\*\*\*\*\* \*\*\*\*(\*\*\*\* 장\*\*)

부\*\*\*\*\* \*\* \*\*\*\*\* (\*\* \*\* \*\* \*\* \*\* \*\*)

귀사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25호의 선원(기관장)이 2024. 10 25. 11:30경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SK오션플랜트 앞 북위 34도 59분 16초 · 동경 128도 28분 14초 해상에서 부상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선장이 예인줄 작업 중 선미갑판에 있던 기관장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로 선박을 조종하여 기관장이 장력을 받은 예인줄에 맞아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인 귀사가 「안전·보건관리매뉴얼」에 따라 예인줄 작업에 대한 선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인줄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예인줄 작업 위험구역 식별 및 선장과 선원 간 위치 확인 절차 마련 등 개선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